

의안번호	2217327
의 퇴 인	손술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1.
추계번호	26C1339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7조의2 (중앙상담기관의 지정 등)	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1. 지역상담기관의 지원 2. 임신·출산 등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3. 그 밖에 임신·출산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	재량규정
	법률 제22103호 안 제21조(경비의 보조) 제1항제4호	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중앙상담기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7조의3 (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)	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1. 임신·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2.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3. 임신의 유지·중지에 관한 상담 4. 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5. 그 밖에 임신·출산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	재량규정
	법률 제22103호 안 제21조(경비의 보조) 제1항제5호	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지역상담기관 운영비의 1/2 이내를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의2(중앙상담기관의 지정 등), 법률 제22103호 안 제21조(경비의 보조) 제1항제4호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조의3(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), 법률 제22103호 안 제21조(경비의 보조) 제1항제5호	

2. 상세 사유

- 현재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중앙 및 지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 -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, 그 외 전국 16개 지역에 상담기관이 지정·운영되고 있음
 - － 해당 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임신·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 상담을 수행하고, 보호출산 신생아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자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
 - －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중앙상담기관 운영 지원에 2억 8,600만원(인건비 지원은 별도로 아동권리보장원 예산에 편성),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에 21억 7백만 원을 편성
- 개정안에 규정된 중앙·지역상담기관은 기존의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역할이 유사하나, 추가로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, 임신의 유지·중지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, 국가가 이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[표 1] 현행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개정안의 상담기관 역할 비교

구 분	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(상담기관의 지정·운영)	「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제7조의2(중앙상담기관의 지정 등)·제7조의3(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)
중앙상담기관	1. 위기임산부의 출산·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·내용의 개발·보급 2.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(이하 “지역상담기관”이라 한다) 및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이라 한다) 종사자에 대한 위기임산부 출산·양육 지원 및 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교육 3.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·운영 4. 위기임산부 온라인·모바일 상담 5. <u>지역상담기관 관리·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</u> 6.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	1. 지역상담기관의 지원 3. 그 밖에 임신·출산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구 분	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(상담기관의 지정·운영)	「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제7조의2(중앙상담기관의 지정 등)·제7조의3(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)
중앙상담 기관	(시행규칙) 1. 위기임산부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2.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통계 구축에 관한 업무 3. 위기임산부 출산·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외국의 정책 조사 및 사례 분석에 관한 업무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	2. 임신·출산 등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
지역상담 기관	1.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·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.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·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.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·정보 제공 및 지원 4.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.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.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·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	1. 임신·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2.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 3. 임신의 유지·중지에 관한 상담 4. 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5. 그 밖에 임신·출산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실시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없고, 이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운영비 규모도 추정하기 어려움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